

 <b>국토교통부</b>	<b>보 도 자 료</b>		
	배포일시	2021. 5. 25.(화) / 총 5매(본문4, 참고1)	
담당 부서	건설산업과	담당 자	• 과장 김광림, 사무관 나은중, 주무관 전혜빈 • ☎ (044) 201-3539, 3546
보 도 일 시		2021년 5월 2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5.(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합니다

- 건설공사 시공명장 육성의 첫걸음... '시공명장' 브랜드화 추진 -

◆ 현장경력이 철근(16년), 형틀목공(4년)이고, 철근직종 기능사 자격과 전국대회 1위 이력을 보유한 A씨는 철근직종에 대해 기능등급 발급을 신청하여 '특급(환산경력 22년)'을 부여받았다.

※ A씨의 환산경력 산정방법

① 실제 현장경력 : 16년(철근직종)×100% + 4년(형틀목공)×50% = 18년

② 이력 환산경력 : 2.0년(기능사) + 2.0년(전국기능경기대회) = 4년

⇒ 환산 경력 = ① + ② = 22년

◆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의 시행으로 A씨를 채용하려는 건설사들이 증가해 고용은 기존보다 안정되었다.

◆ 아울러, 현장에서 쌓아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교육자로서의 길을 모색하고 있고, '시공명장'으로서 인식되어 사회적 대우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을 추진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 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8년 2월부터 건설업계, 노동계, 관련 학계 및 이해관계자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TF)를 운영, 총 16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 또한, 실제 공사현장 38곳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등급을 시범적용하는 등 제도시행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현장과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 \* 기능등급제 위탁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이력을 종합하여 등급 산정·부여
  - 객관적으로 검증된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하여 환산경력을 산정하고,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한다.

< 등급구분 기준 >



-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자격증, 교육이수 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하여 환산 경력에 포함시킨다.

**< 경력 환산 기준 >**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공제나 고용보험으로 확인된 근로일수</li> <li>※ 신청 직종과 같은 직종 경력은 100%, 그 외 경력은 50%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기능사(1.5년) 기능사(2.0년) 산업기사(4.9년) 기능장(10.5년)</li> <li>※ 신청 직종과 같은 직종 자격은 100%, 그 외 자격은 20%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일수 × 등급별 계수</li> <li>※ 등급별 계수 : 고급이상(4.5) 중급(3.0) 초급(1.0) 기초(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대회(1.5년) 지방대회(1.5년) 전국대회(2년) 국제대회(3년) × 순위별 계수</li> <li>※ 순위별 계수 : 1위(100%), 2위(80%) 3위(60%)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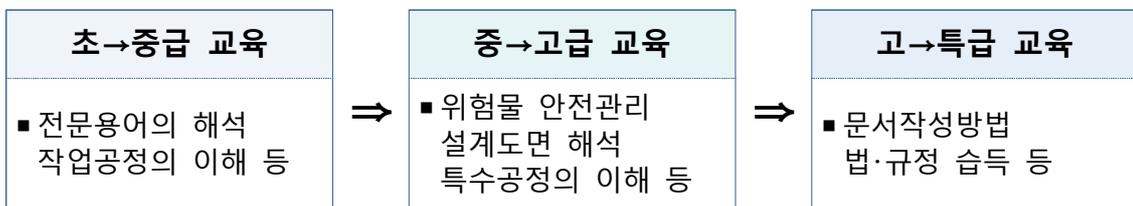
□ 아울러, 별도의 교육기회 없이 현장에서 일하며 시공방법을 배워야 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시행한다.

- 우선 올해에는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5월부터는 승급 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최초교육은 기능등급제를 소개하고 건설현장의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온라인(<https://www.cw.or.kr/plus>)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음

- 승급교육은 등급별로 갖춰야 하는 기능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중급, 중→고급 교육은 기능 중심의 실습교육으로 구성하고, 고→특급교육은 관리역량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직종별 교육 수요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등급제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① 우선,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하는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② 공공 건설공사 현장을 시범현장으로 선정하여, 건설근로자의 현장 관리 역량과 숙련 근로자 투입에 따른 시공품질 향상 효과를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의 역할 확대도 추진한다.

\* 경기도, LH 등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21.7월~)

③ 이와 함께 기능등급제도와 연계한 금리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건설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고·특급 근로자들이 승급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자격 부여방안도 추진한다.

□ 또한, 장기적으로 특급 건설근로자를 '시공명장'으로 브랜드화하여 건설업을 유망직종으로 개선하고 고(高)등급 건설근로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 “건설근로자들의 처우향상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기능등급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https://www.cw.or.kr/plus>)에서 발급하거나, 각 지역의 지사와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기타문의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서 가능

○ 아울러,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수수료(2,000원)는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반영하여 내년까지 면제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나은중 사무관(☎ 044-201-35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시행됩니다.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하고 나의 등급을 확인해보세요!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

건설산업 차원에서 건설기능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력관리로 직업전망제시를 통해 신규인력 진입촉진 및 처우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

### 등급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기능인의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교육·훈련, 자격, 포상 등을 통합·환산하여 기능 등급을 구분·관리



- ▶ 현장경력: 퇴직공제 신고일수 + 고용보험 신고일수
- ▶ 교육·훈련: 건설전문인력 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건설 분야의 교육 또는 훈련의 이수사항
- ▶ 자 격: 국가기술자격,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국건설비건설협회·한국건설관리사협회 등의 인정기능사 자격
- ▶ 포 상: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의 기능경기 대회 포상

### 등급구분 기준

환산근로일수를 직종의 연평균 신고일수로 나누어 경력연수 산정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등급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건설기능플러스(https://www.cw.or.kr/plus)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무료)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관련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1666-1122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안내문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안내문

### 적용대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건설 생산물을 만드는 근로자로 일용직과 기능인력 출신의 상용직 관리자를 포함

※ 단,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경력관리와 되고 있지 않은 건설근로자에 한함

### 등급별 기능수준

작업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상급자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간단한 작업 수행

**초급**

- ▶ (지식 및 기능)공구의 명칭과 사용방법, 현장의 공사용어 및 안전 신호 등 이해
- ▶ (숙련수준)조공수준
- ▶ (자격·경력 예시)대체로 자격증은 없고, 현장경력 보유

**중급**

- ▶ 제한적인 전문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업 수행
- ▶ (지식 및 기능)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작업결과를 숙지 하고 있으나, 중요한 작업방법 결정 등은 상급자의 도움 필요
- ▶ (숙련수준)준기능수준
- ▶ (자격·경력 예시)인정기능사 또는 기능사+ 현장경력

**고급**

- ▶ 고도의 숙련도를 바탕으로 작업 수행 또는 지시가 가능 하며, 일정 수준의 관리능력도 보유
- ▶ (지식 및 기능)재료 결함식별, 도면해석,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업수행 가능
- ▶ (숙련수준)기능공 수준, 소규모팀·반장수준
- ▶ (자격·경력 예시)신입기능사 + 현장경력

**특급**

- ▶ 고도의 숙련도와 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작업 수행 및 지시가 가능하며, 조직·업무 전반에 대한 수행
- ▶ (지식 및 기능)고도의 전문지식 및 조직관리 관리능력 보유
- ▶ (숙련수준)중규모 이상의 팀·반장수준
- ▶ (자격·경력 예시)기능장+ 현장경력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세부내용 살펴보기

**등급산정기준**

기능 요소 수집 → 특성별 근로일수 환산 → 환산된 근로일수 합산 → 근로일수구간별 분류 → 기능등급 부여

현장 경력	활동직종 근로일수(합) → 100% 인정 기타직종 근로일수(합) → 50% 인정
자격증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인정기능사 등 → 근로일수로 환산
교육 훈련	6개월 과정, 3개월 과정, 심화과정 등 → 근로일수로 환산
포상	국제기능올림픽, 전국기능경기대회, 민간기능대회 등 → 근로일수로 환산

※ 현장근무경력: 등급증서 발급신청 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신고 경력은 100%, 이의 직종 또는 미표시직종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합산 일수를 해당 직종의 연평균 신고일수(직전년도말 기준)로 나눈 연수로 환산

**환산 경력 산정 예시**

타일 직종 발급대상자의 직종별 근로일수가 타일(100일), 미장(100일), 보통인부(100일), 직종미표시(100일)이고, 타일직종의 연평균근로일수가 50일인 경우 → 환산경력 5년

(타일(100일×100%) + 미장(100일×50%) + 보통인부(100일×50%) + 직종미표시(100일×50%)) ÷ 타일직종 연평균 근로일수(50일)

### 등급산정 자료 연계기간 및 제공자료

부유기관	관리 DB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DB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DB
한국고용정보원	교육·훈련 DB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DB 기능경기대회 포상 DB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기능경기대회 포상 DB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기능경기대회 포상 DB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국건설비건설협회	인정기능사 자격 DB
한국건설관리사협회	

### 등급제 시행 직종

※ 운영시점 직종은 타 법령에 따라 별도의 경력관리제도 운영 중으로 기능등급 미시행 직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1	토공	16	도장	31	건축배관	46	플랜트제관
2	포장	17	철근	32	보일러	47	덕트
3	궤도	18	콘크리트	33	상하수도 배관	48	플랜트덕트
4	보링	19	창호	34	플랜트기계설비	49	일반수용업
5	준설	20	비계	35	플랜트전기설비	50	일반특수용업
6	측량	21	패널조립	36	플랜트계측설비	51	플랜트특수용업
7	현물목공	22	도색	37	플랜트배관	52	플랜트특수용업
8	건축목공	23	유리	38	조경	53	송배전
9	조적	24	수장	39	발육	54	배관
10	미장	25	보온	40	건설기계	55	내선전기
11	건설	26	플랜트보온	41	일반기계	56	외선전기
12	방수	27	지붕	42	잠수	57	철도신호제어
13	코팅	28	철거	43	문화재시공	58	정보통신
14	타일	29	강구조	44	일반기계설비	59	발파
15	석공	30	건축기계설비	45	제관	60	안전관리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안내 리플렛